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19가단505012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진

담당변호사 김상훈

피고 1. A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진

변론 종결 2021. 1. 13.

판결 선고 2021. 2. 17.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3,232,377원 및 그 중 82,497,472원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2019. 3. 26.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A은 원고에게 83,232,377원 및 그 중 82,497,472원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8. 8. 30.자 재산분할계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8. 9. 21.자 재산분할계약,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8. 6. 25.자 재산분할계약은 83,232,377원 및 그 중 82,497,472원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83,232,377원 및 그 중 82,497,472원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83,232,377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82,497,472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9. 2. 2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3. 26.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2018. 10. 3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2019. 2. 28. 82,497,47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피고들은 1983. 3. 25.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었다가 2017. 8. 30. 협의이혼하였다.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채무 및 처분행위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C단체, 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 및 4,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피고 A은 2018. 5. 29. 위 근저당권의 당시 피담보채무액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8. 5. 31.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피고 A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내용과 같이 각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D 토지	2018. 9. 12.	2018. 8. 30.
D 지상 건물	2018. 9. 27.	2018. 9. 21.
E 토지	2018. 7. 9.	2018. 6. 25.
F 토지	2018. 7. 9.	2018. 6. 25.

라) 피고 B은 2018. 10.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G조합,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평택 공장에 관한 채무 및 처분행위

가) 피고 A은 평택시 H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 I동 내지 J동(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평택 공장'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평택 공장에 관하여는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합계 19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4개가 마쳐져 있었다.

나) 피고 A은 2018. 5. 18. 주식회사 K와 평택 공장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A은 2018. 7. 31. 평택 공장에 마쳐져 있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5) L아파트에 관한 채무 및 처분행위

가) 피고 B은 고양시 덕양구 L아파트 M호(이하 'L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L아파트에 관하여는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피고 B은 2017. 7. 7. N, O과 L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1. 20. 이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B은 2017. 9. 11. 매매대금 잔금 중 1억 원을 선지급 받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1억 원을 변제하였고, 2017. 11. 20.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아 나머지 대출금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나 제1 내지 3, 5 내지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주식회사 P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사이의 2018. 6. 25.자, 2018. 8. 30.자 및 2018. 9. 21.자 각 재산분할약정은 피고 A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위 재산분할약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 B

- 피고들은 2017. 8. 30. 협의이혼을 하면서 그 무렵에 L아파트 및 평택공장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L아파트와 평택공장 및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남은 현금은 피고 A의 소유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의 소유로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평택 공장의 매도가 늦어지면서 피담보채무 변제 또한 늦어짐에 따라, 이를 모두 마무리한 2018년 중순경에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것이다.

- 2017. 8. 30. 당시 피고 A은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고, 피고들의 혼인생활을 고려할 때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 및 위자료조로 받은 것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들 간의 재산분할약정이 언제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나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7. 8. 30. 협의이혼을 하였고, L아파트에 관하여 그 무렵인 2017. 7. 7.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L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고, 2017. 9. 7. 공인중개사에게 평택 공장 매도를 의뢰하여 2018. 5. 18. 평택 공장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31.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으며, 2018. 7. 말에 평택 공장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아 평택 공장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피고들 소유의 적극재산 중 이 사건 부동산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발생한 채무를 그 처분대금으로 모두 변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협의이혼에 즈음하여 재산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에 돌입하였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보유한 각 재산별로 별도의 재산분할 약정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 A은 평택 공장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자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변제하였고, 그 변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그 소유권보존등기일이 2018. 9. 12.이고(을나 제5호증의 7), 피고들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후로 곧바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어서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그 등기일에 가까운 일정한 임의의 날짜를 재산분할약정일로 삼아 등기원인으로 기재한 것이라는 피고 B의 주장은 이를 수긍할 만하다.

이상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원인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고들 간의 재산분할약정은 협의이혼일인 2017. 8. 30.경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들 간의 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니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한편,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2) 2007. 8. 30.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피고들의 재산내역은 아래 표 기재내용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거나 을나 제6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A	적극재산	1	평택 공장	2,150,000,000
2	이 사건 부동산	343,570,000		
합계	2,493,570,000			
소극재산	1	평택 공장 피담보채무(중소기업은행)	1,468,554,134	
2	L아파트 피담보채무(중소기업은행)	350,000,000		
3	이 사건 제1, 3, 4부동산 피담보채무(C단체)	117,000,000		
4	기술신용보증기금 채무	150,000,000		
5	Q은행 대출금채무	95,000,000		
합계	2,180,554,134			
A 순재산 합계	314,015,866			
B	적극재산	L아파트	370,000,000	
소극재산	없음	0		
B 순재산합계	370,000,000			

한편, 피고들의 혼인기간이 34년에 이르고, 피고들의 재산형성 경위, 피고 B이 피고 A의 사업을 도우면서 세 명의 자녀를 양육해 온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 B은 피고 A과의 공동재산 중 50% 상당을 분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협의이혼 당시 피고들이 한 재산분할 약정에 따라 피고 B은 시가 343,57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이는 협의이혼 당시 피고들의 순재산 합계액인 684,015,866원(= 314,015,866원 + 370,000,000원)의 50%에 상당한 가액의 재산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의 소유로 분할한 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피고들이 한 재산분할약정의 내용이 사실상 전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의 소유로 한 것이고,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고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피고 B이 대출받아 은닉하고 있는 2억 원의 1/2에 해당하는 1억 원은 상당성의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협의이혼 성립일 이후에 부부 일방이 새로운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와 같은 재산변동 사항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 것이 아니고(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앞서 본 재산분할약정의 내용 및 재산의 처분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대출일이 피고 A의 신용보증사고일인 2018. 10. 31.에 근접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통모하여 위와 같이 재산분할을 한 후 대출을 받아 피고 A의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가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재산분할 약정일을 등기원인일에 즈음한 2018년으로 본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되고, 이 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제1, 3, 4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한 피담보채무가 일괄하여 변제된 경위, 제2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이

2018. 9. 12.로서 그 보존등기 직후에 제1, 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가 2018. 5. 31. 변제된 이후로 이 사건 제3, 4부동산에 관한 등기원인일인 2018. 6. 25.경에 이루어진 하나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 A의 2018. 6. 25. 기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액은 1,457,438,41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채무와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Q은행에 대한 채무 합계 1,713,554,134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는 모두 변제된 상태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A의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임정윤

별지